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 마련〉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43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개 요	2
1.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2
2. 총괄 검토의견	5
가. 특별자치도의 설치	5
나. 전라남도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등 지원방안 마련	8
다. 종합의견	13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5
1. 총칙 및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1편 및 제2편,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	15
가. 제명, 목적 및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제1편,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5
나.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제2편제1장,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8
다.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2편제2장,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21
라. 자치행정의 확대(제2편제3장,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25
2.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활력증진 기반 조성(제3편)	32
가. 지방소멸극복 종합계획(제3편제1장,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32
나.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제3편제2장)	37
(1) 생활인구 유입·확대(제3편제2장제1절,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37

(2) 농산어촌 활력 촉진(제3편제2장제2절,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44
(3) 글로벌 문화·관광거점 조성(제3편제2장제3절, 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51
3. 에너지산업 등 미래신성장 기반 조성(제4편)	59
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제1장, 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59
나. 첨단전략산업 육성(제2장, 안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67
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운영(제3장, 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77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안 제49조)	77
(2) 투자진흥지구의 운영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79
라. 공항·항만 경쟁력 확보(제4장, 안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89
(1) 공항경제권의 조성(안 제57조 및 제58조)	89
(2)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90
마. 토지의 효율적 활용(제5장, 안 제64조 및 제65조)	98
4. 보칙 및 벌칙(제5편 및 제6편)	101
5. 부 칙	10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1.
3. 회부연월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지역으로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함.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규모, 기간 등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함.

이에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남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개 요

1.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본칙 6편·10장 총 73개 조문 및 부칙 6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조문 내용	
<본 칙>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전남자치도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전남 특별자치 도 설치· 운영	제1장 전남특별 자치도의 설치	제6조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	전남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제8조	전남특별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9조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2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장 자치행정 의 확대	제13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1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15조	읍·면·동의 구역 특례
		제16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제17조	국가와 전남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8조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제19조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제20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제21조	특례부여 및 지원
제3편 지방 소멸 극복 및 인구활력 증진 기반조성	제1장 지방소멸 극복 종합계획	제22조	종합계획 수립
		제23조	종합계획의 결정
		제24조	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종합계획심의회
	제2장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기반	제25조	저출생 대책에 대한 특례
		제26조	전남특별자치도 체류자격
		제27조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특례

구 분		조문 내용	
	조성	제28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제30조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제31조	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공급식 공급 지원 특례
		제32조	어촌·어항법상의 지방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특례
		제33조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제34조	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
		제35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제36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37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4편 에너지산업 등 미래신성장 기반조성	제1장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제38조	전기사업에 대한 특례
		제39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특례
		제40조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특례
		제41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특례
	제2장 첨단전략산업 육성	제42조	첨단전략산업 육성
		제43조	전남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44조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제45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제46조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특례
		제47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제3장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제49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50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51조	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제5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제53조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제54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55조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56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4장 공항·항만 경쟁력 확보	제57조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제58조	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제59조	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제60조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제61조	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제62조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63조	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5장 토지활용	제64조	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제65조	개발제한구역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편 보칙		제66조	해외협력
		제67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제68조	청문
		제69조	감독

구 분	조문 내용	
	제70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71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7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편 벌칙	제73조	과태료
<부 칙>		
-	제1조	시행일
	제2조	종전 전라남도 폐지
	제3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4조	전라남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종전의 전라남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칙은 ①총칙으로서 제정안의 목적, 적용범위, 국가의 책무, 전남자치도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제1편),

②정부의 직할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남특별자치도의 조직·인사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제2편),

③지방소멸극복 종합계획, 전남특별자치도 체류자격, 농촌활력촉진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전남특별자치도의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활력증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및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제3편),

④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특례, 전남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전남특별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제4편 제1장, 제2장 및 제5장),

⑤투자진흥지구 조성·운영 근거, 국제물류지구 조성 근거 등 전남특별자치도의 내·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공항·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제4편 제3장 및 제4장).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전라남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전라남도의 폐지 및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마련하는 내용임.

2. 총괄 검토의견

가. 특별자치도의 설치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도인 전남특별자치도(이하 “전남자치도”라 함)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설치하는 문제에 해당함.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¹⁾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의 변경과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전남자치도를 설치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²⁾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청문절차로서 관계 지방의회³⁾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청문절차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⁴⁾.

또한 전남자치도와 기 설치·운영 중인 제주·강원·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차별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재 전국에 설치된 특별자치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네 곳임. 이 때 세종특별자치시⁵⁾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⁶⁾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1)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4)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05.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09.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시·도와 달리 설치되었고, 관할구역에 시·군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는 설치목적 및 행정체계에 차별화된 부분이 있음.

반면, 최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⁷⁾와 전북특별자치도⁸⁾의 경우 설치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나 일반 시·도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과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례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특별자치도의 급증으로 인해 지방자치체계에 혼란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음.⁹⁾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

5) 「세종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법」”이라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2.12.7.) 회의록 25·26p, 28·29p,

제40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2.12.27.) 회의록 32p

도와 유사하게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전남자치도를 설치하려면 전남자치도를 설치할 필요성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전남자치도 설치를 통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 여부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전라남도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등 지원방안 마련

전라남도의 인구 등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인구수는 2020년 185만 1,549명에서 2023년 180만 4,217명까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인구 순위는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 9위임. 또한 2024년 3월 최초로 주민등록인구가 18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4년 6월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179만 4,967명임.

<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수 및 순위 현황 >

(단위: 명, 순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3.	2024.6.
전국	51,829,023 (-)	51,638,809 (-)	51,439,038 (-)	51,325,329 (-)	51,293,934 (-)	51,271,480 (-)
서울	9,668,465 (2)	9,509,458 (2)	9,428,372 (2)	9,386,034 (2)	9,384,739 (2)	9,366,283 (2)
부산	3,391,946 (3)	3,350,380 (3)	3,317,812 (3)	3,293,362 (3)	3,287,292 (3)	3,280,749 (3)
대구	2,418,346 (7)	2,385,412 (7)	2,363,691 (7)	2,374,960 (7)	2,369,962 (7)	2,367,183 (7)
인천	2,942,828 (5)	2,948,375 (5)	2,967,314 (5)	2,997,410 (5)	3,006,045 (5)	3,011,073 (5)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3.	2024.6.
광주	1,450,062 (14)	1,441,611 (14)	1,431,050 (14)	1,419,237 (14)	1,415,774 (14)	1,413,606 (14)
대전	1,463,882 (13)	1,452,251 (13)	1,446,072 (13)	1,442,216 (13)	1,441,689 (13)	1,440,558 (13)
울산	1,136,017 (15)	1,121,592 (15)	1,110,663 (15)	1,103,661 (15)	1,101,336 (15)	1,100,304 (15)
세종	355,831 (17)	371,895 (17)	383,591 (17)	386,525 (17)	387,411 (17)	387,940 (17)
경기	13,427,014 (1)	13,565,450 (1)	13,589,432 (1)	13,630,821 (1)	13,642,451 (1)	13,661,438 (1)
강원	1,542,840 (12)	1,538,492 (12)	1,536,498 (12)	1,527,807 (12)	1,524,198 (12)	1,522,542 (12)
충북	1,600,837 (11)	1,597,427 (11)	1,595,058 (11)	1,593,469 (11)	1,591,044 (11)	1,591,485 (11)
충남	2,121,029 (8)	2,119,257 (8)	2,123,037 (8)	2,130,119 (8)	2,132,745 (8)	2,134,817 (8)
전북	1,804,104 (10)	1,786,855 (10)	1,769,607 (10)	1,754,757 (10)	1,749,376 (10)	1,745,885 (10)
전남	1,851,549 (9)	1,832,803 (9)	1,817,697 (9)	1,804,217 (9)	1,798,435 (9)	1,794,967 (9)
경북	2,639,422 (6)	2,626,609 (6)	2,600,492 (6)	2,554,324 (6)	2,546,960 (6)	2,544,174 (6)
경남	3,340,216 (4)	3,314,183 (4)	3,280,493 (4)	3,251,158 (4)	3,241,374 (4)	3,236,224 (4)
제주	674,635 (16)	676,759 (16)	678,159 (16)	675,252 (16)	673,103 (16)	672,252 (1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은 2022년과 2023년 0.97명으로 나타났고, 순전출인구는 2024년 1분기 2,597명으로 나타나 1분기 현재 이미 2023년의 규모(1,800명)를 넘어섰음.

< 시도별 합계출산율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잠정)
전국	0.977	0.918	0.837	0.808	0.778	0.72
서울	0.761	0.717	0.642	0.626	0.593	0.55
부산	0.899	0.827	0.747	0.728	0.723	0.66
대구	0.987	0.932	0.807	0.785	0.757	0.70
인천	1.006	0.940	0.829	0.778	0.747	0.69
광주	0.972	0.913	0.811	0.896	0.844	0.71
대전	0.952	0.883	0.805	0.810	0.842	0.79
울산	1.131	1.084	0.984	0.940	0.848	0.81
세종	1.566	1.472	1.277	1.277	1.121	0.97
경기	1.002	0.943	0.878	0.853	0.839	0.77
강원	1.067	1.082	1.036	0.979	0.968	0.89
충북	1.172	1.050	0.983	0.949	0.871	0.89
충남	1.186	1.112	1.029	0.963	0.909	0.84
전북	1.044	0.971	0.909	0.850	0.817	0.78
전남	1.240	1.234	1.145	1.017	0.969	0.97
경북	1.167	1.089	1.003	0.966	0.930	0.86
경남	1.122	1.046	0.945	0.903	0.838	0.80
제주	1.220	1.145	1.021	0.951	0.919	0.8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합계출산율 현황 및 2023년 사망·출생통계(잠정) 바탕으로 직접 작성

< 시도별 전입·전출인구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1분기		
	전입	전출	순계	전입	전출	순계	전입	전출	순계	전입	전출	순계
전국	72342	72342	0	65215	65215	0	62873	62873	0	18478	18478	0
서울	14887	15440	-1028	12057	12687	-330	12063	12823	-3120	35741	36609	-1,132
부산	41,323	40,226	1,893	33,848	39,410	-13,562	36,471	35,708	1,432	11,488	11,736	-2,433
대구	30,761	32,080	-2,319	25,554	27,673	-1,159	26,291	30,159	-5,288	84,637	87,668	-3,031

구분	2021			2022			2023			2024. 1분기		
	전입	전출	순계	전입	전출	순계	전입	전출	순계	전입	전출	순계
인천	43,137	42,714	11,423	35,140	35,089	28,101	42,127	30,620	33,507	110,550	100,889	9,681
광주	21,288	21,871	-583	18,224	19,566	-762	16,296	17,983	-907	50,659	53,368	-2,709
대전	21,355	22,486	-891	19,705	20,701	-296	18,084	18,558	-2474	57,848	57,903	-55
울산	12,980	14,554	-1374	10,747	11,783	-936	11,641	12,286	-6215	33,864	35,981	-2,117
세종	7,6912	62,827	14,085	65,529	55,401	10,128	56,050	54,360	1,690	19,782	19,235	547
경기	23,215	18,598	15,517	16,590	16,208	43,882	18,183	16,571	44,612	48,401	45,249	13,152
강원	21,703	21,422	6,681	19,864	18,730	7,494	17,336	17,473	-1,397	55,823	57,458	-1,635
충북	21,400	21,038	3,462	18,419	18,218	5,201	18,341	18,248	3,873	51,018	51,946	-928
충남	22,195	23,573	8,522	20,488	24,174	14,314	23,056	23,216	15,840	83,947	79,011	4,936
전북	22,710	22,511	-5801	19,442	20,547	-5,115	18,788	19,245	-4,457	56,003	58,718	-2,715
전남	22,519	22,106	-4,487	19,956	19,301	-345	18,557	18,537	-1,800	52,106	54,708	-2,597
경북	31,786	31,429	3,337	23,156	27,822	-7,666	25,287	26,242	-8,205	84,267	87,540	-3,273
경남	34,782	38,485	-13,703	32,211	34,758	-18,547	30,609	31,609	-16,000	97,134	108,411	-6,277
제주	94,979	91,062	3,917	86,865	83,717	3,148	81,508	83,195	-1,687	26,045	27,723	-1,67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입인구, 전출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전라남도의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보면, 2020년 23.5%로 나타나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었고, 2024년 6월 현재 26.6%까지 증가했음.

< 시도별 고령인구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06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전국	16.4	8,496,077	17.1	8,851,033	18.0	9,267,290	19.0	9,730,411	19.5	9,988,411
서울	16.1	1,561,139	16.8	1,597,447	17.6	1,658,207	18.5	1,733,580	18.9	1,773,809
부산	19.4	657,711	20.4	681,885	21.5	712,412	22.6	745,199	23.2	762,761
대구	16.6	400,494	17.5	417,060	18.4	435,698	19.6	466,338	20.2	479,103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06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인천	14.0	411,483	14.8	435,431	15.6	463,850	16.6	497,057	17.1	514,802
광주	14.2	205,666	14.8	213,291	15.6	222,970	16.5	233,878	17.0	240,161
대전	14.4	210,784	15.2	221,207	16.1	232,663	17.0	244,756	17.5	251,709
울산	12.6	143,367	13.6	152,961	14.7	163,812	15.9	175,709	16.6	182,145
세종	9.8	34,881	10.1	37,463	10.5	40,219	11.0	42,560	11.3	43,887
경기	13.2	1,775,315	13.9	1,881,464	14.7	1,992,807	15.6	2,122,718	16.1	2,195,238
강원	20.7	319,691	21.7	333,176	22.8	349,874	24.0	366,555	24.7	375,908
충북	18.0	288,148	18.9	301,516	19.9	316,939	20.8	332,237	21.4	340,567
충남	19.1	405,188	19.8	419,979	20.6	436,895	21.3	454,534	21.8	465,026
전북	21.4	386,203	22.3	397,619	23.2	410,619	24.1	423,128	24.7	430,431
전남	23.5	435,880	24.3	445,198	25.2	457,481	26.1	470,874	26.6	478,180
경북	21.7	573,715	22.7	596,312	23.8	618,275	24.7	630,486	25.3	644,230
경남	17.4	580,258	18.4	608,379	19.5	638,801	20.6	669,646	21.2	686,768
제주	15.7	106,154	16.3	110,645	17.1	115,768	17.9	121,156	18.4	123,68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고령인구비율 현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종합하면,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97명으로 전국 2위로 나타났으나 인구대체수준¹⁰⁾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인구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 확대되고 있어 인구의 자연스러운 출생과 사회적 이동을 통한 전라남도 인구규모의 현 상태 유지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고령인구비율의 확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라남도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임.

10) 인구를 현재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로 대체로 2.1명임

다. 종합의견

제정안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자치도를 설치함과 동시에, 전남 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 행·재정적 특례 및 권한이양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남자치도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전라남도의 인구추세 및 인구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지방소멸 위기는 전남자치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국가적 문제에 해당하며, 전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여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해당함.

따라서, 제명 및 목적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전남자치도만의 특화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정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향후 전남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 선도적, 정책랩(Policy Lab)¹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1) “정책랩(Policy Lab)”이란 사회를 둘러싼 체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정부, 민간 싱크탱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정부혁신으로,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최적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정책 실험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오차를 발견·수정해나가는 개방형 정부혁신의 방법론을 의미함(조세현 등, 「정책랩(Policy Lab)의 개념, 동향 그리고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2019).

또한, 제정안에 규정된 전남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 행·재정적 특례 및 권한이양 등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같이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지원방안을 함께 입법화하는 방안 외에 전남자치도에 대한 지원방안만 마련하는 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현행 제도·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남도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여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으므로, 해당 경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 총칙 및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1편 및 제2편,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가. 제명, 목적 및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제1편,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 정 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남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남특별자치도(이하 “전남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남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남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남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남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가 누리던 행정상·

제 정 안

재정상의 이익을 전남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남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남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전남자치도의 책무) ① 전남자치도는 전남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남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남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남자치도는 전남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남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 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남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남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남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남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남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정안은 목적, 적용범위 등 총칙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하 “「강원도법」이라 함)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도법」”이라 함)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제정안을 입법화한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제명 및 목적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각각 국제자유도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라는 해당 지역이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제명 및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전남자치도 또한 제명 및 목적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전남자치도만의 특화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정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각각 ‘글로벌허브도시’와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안¹²⁾ 또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둘째, 제정안 제4조 및 제5조는 국가 및 전남자치도의 책무를 규정

12)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50호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082호

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규정된 책무는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제정안의 목적이 잘 드러나는 국가 및 전남자치도의 책무를 규정하여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하나, 극복대상인 ‘지방소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제2편제1장,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 정 안
제2편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운영
제1장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
제6조(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남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남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전남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남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남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남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남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남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

제 정 안

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전남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남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남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남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정안은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 전남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전남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및 전남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등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전술한 바와 같이 전남자치도를 설치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청문절차의 이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제기된 일반 시·도와의 차별성 여부, 특별자치시·도의 급증에 따른 지방자치체계 혼란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전남자치도를 설치할 필요성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전남자치도 설치를 통한 지원의 특별한 필요성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제2편 제2장,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 정 안
제2장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남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남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남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남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전남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무안국제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조성에 관한 사항 7. 광양만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 정 안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남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남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남자치도는 지방소멸 극복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남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정안은 전남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남자치도 설치 시 발전방안 도출 및 각종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다수 행정부처와의 협의를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부처 간의 협의·조율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행정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남자치도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가 규제정비,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전남자치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재생에너지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제5호), 무안국제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조성에 관한 사항(제6호), 광양만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제7호)은 심의사항 외 제정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한 사항들에 해당하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 현재까지 출범한 특별자치시·도에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안 제10조에 따라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¹³⁾.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6~’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20	20	20	20	20	100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15	15	15	15	15	75
실무지원단 운영비	59	60	61	62	63	305
합 계	94	95	96	97	98	480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13)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전제하였으며,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평균 운영예산(5,65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음.

라. 자치행정의 확대(제2편제3장,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 정 안

제3장 자치행정의 확대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①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

제 정 안

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남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남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와 전남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 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남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은 제외한다)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정 안

제19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21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남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남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정 안
④ 전남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전남자치도 및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 제2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특례 등 전남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첫째,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안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 비교>

제정안		강원	전북
제13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
제1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	○
제15조	읍·면·동의 구역 특례	-	○
제16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	○
제17조	국가와 전남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	○
제18조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	○
제19조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	○
제20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	○
제21조 (①~③)	특례부여 및 지원	○	○

특히, 안 제14조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¹⁴⁾에도 불구하고 전남자치도지사 또한 도 내 시·군의 통합을 건

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15조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15)에도 불구하고 전남자치도 내 읍·면·동을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분산된 인구를 집중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별규정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별규정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요약>

개별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사유
§16(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고용노동부	신중검토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치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목적, 전국적·통일적 법집행이 필요한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특징 등 고려 필요

둘째, 안 제21조제4항은 특례를 부여받은 전남자치도 및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 제26호16)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남자치도가 「지방재정

14)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5)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 제37조¹⁷⁾에 따른 투자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 필요성 및 무분별한 투자 방지를 통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필요성 등 투자심사 제도의 취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남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제41조의2) 관련

2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17)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안 제21조제4항은 특례를 부여받은 전남자치도 및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남자치도는 안 제21조에 따른 특례부여의 신청 및 특례부여 대상이 아니므로, 특례를 부여받은 ‘전남자치도’가 수행하는 사업은 안 제21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¹⁸⁾.

18) 안 제21조제1항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고 있음.

2.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활력증진 기반 조성(제3편)

가. 지방소멸극복 종합계획(제3편제1장,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 정 안
제3편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활력증진 기반 조성 제1장 지방소멸극복 종합계획 제22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남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멸 극복과 미래성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8.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10.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1. 자연생태·생명·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2.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3.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17.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전남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24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자치도에 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6. 제29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특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강원도법」,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의 수립방식, 절차 등은 「강원도법」에 따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전북도법」에 따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동일함.

<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의 내용	강원	전북
1. 전남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
2. 지방소멸 극복과 미래성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4.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
5.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	○
6.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	○
7.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
8.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

종합계획의 내용	강원	전북
9.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
10.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
11. 자연생태·생명·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
12.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
13.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
1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	○
15.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
16.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	-
17.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18.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
19.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다만,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각 사항이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도입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종합계획의 내용 중 제2호의 ‘지방소멸 극복과 미래성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1호 ‘전남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과 다소 유사·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7호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지리적 특성 상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용이한 측면이 있음. 전남자치도에도 이와 유사한 특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항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 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안 제22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6,900만원으로 추계되며¹⁹⁾, 안 제24조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000만원으로 추계됨²⁰⁾.

<안 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6~‘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종합계획의 수립(안 22조)	269	0	0	0	0	269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안24조)	8	8	8	8	8	40
소계	277	8	8	8	8	309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19)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추계의 전제에 따라 전라남도의 유사 계획 사례 예산(2억 5,00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음.

20)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종합계획심의회 위촉위원 수를 15명으로 가정하고,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함.

나.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제3편 제2장)

(1) 생활인구 유입·확대(제3편 제2장 제1절,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 정 안
제2장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1절 생활인구²¹⁾ 유입·확대 제25조(저출생 대책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가 초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른 저출생 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출산 장려, 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한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전남특별자치도 체류자격)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남자치도 내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

제 정 안

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남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등록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활동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제 정 안

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안 제25조)

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22)에 따른 저출생 대책을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출산 장려, 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남자치도의 구체적 특수성을 반영한 출산 장려, 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제정안의 취지 및 문언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²³⁾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으로 보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임.

제정안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 필요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연계성 있는 복지체계 구축·운영 필요성, 전남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제도 설계·운영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26조 및 제27조)

제정안은 전남자치도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 신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해당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남자치도 내의 고등학교·기술고등학교에 등록한 외국인유학생 및 그 부모에 대하여는 체류자격 상한, 발급, 활동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전남자치도 내 외국인 이민자의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및 인재영입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

성, 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출입국·이민 제도의 혼란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남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²⁴⁾

참고로, 「전북도법」의 경우 제정안과 유사하게 전북자치도 이민비자 자격 신설 및 중고등학교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특례 부여 등과 관련

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²⁵⁾²⁶⁾.

(안 제28조)

제정안은 전남자치도에 교육 관계 법률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남자치도의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할 수 있는 학교로, 외국인 및 내국인(전체 정원의 30%)이 입학할 수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당초 설립목적의 변질, 학교서열화 및 교육양극화 심화 등의 이유로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학생의 선택권 및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이유로 교육의 자율성·수월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특례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5) 전국적·통일적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체류자격 등 사증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검토의견이 있었음.

26) 참고로, 「강원도법」의 경우 제정안과 유사하게 강원자치도 이민비자 자격 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참고로, 「강원도법」과 「전북도법」의 경우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²⁷⁾.

교육부는 전남자치도 전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농산어촌 활력 촉진(제3편제2장제2절,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 정 안
제2절 농산어촌 활력 촉진 제29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 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7) 「강원도법」의 경우 2023.05.24.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논의 경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되었고, 「전북도법」의 경우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배제되는 예외적 제도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검토의견이 있었음.

제 정 안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축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축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축진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축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축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축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축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축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⑨ 축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허가·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0조(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전남자치도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는 전남자치도의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을 감안하여 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지원을

제 정 안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해 국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공급식 공급 지원 특례) ①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에서는 전남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가 전남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공공기관 및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어촌·어항법상의 지방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촌·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단

제 정 안

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안 제29조)

제정안은 도지사가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강원도법」 제49조²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

28) 「강원도법」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법」의 경우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의 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이양된 권한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농지 등의 면적에 상한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하였음²⁹⁾).

반면, 제정안은 도지사가 촉진특구에서 이양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농지의 훼손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30조)

제정안은 도지사가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첨단 농식품 수출전문단지를 지정·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전문단지에 대한 도지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국가의 의무적인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수출전문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

-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촉진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9) 참고로, 2024년 8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약 4만 4천 헥타르가 지정되어 있음.

려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남자치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31조)

제정안은 전남자치도 내 공공기관과 군부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강원도법」 제54조³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방부는 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강원도법」

30) 「강원도법」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은 지역산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 1호³¹⁾에 따른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한정하고 있고, 전남자치도에 특례 부여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32조)

제정안은 지방어항 지정, 어항개발계획 수립·변경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등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제주도법」 제294조³²⁾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법」

31) 「접경지원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32) 「제주도법」

제294조(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촌·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및 「전북도법」에는 유사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제정안에 대하여는 어촌 및 어항의 체계적인 정비·개발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남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글로벌 문화·관광거점 조성(제3편제2장제3절, 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 정 안
제3절 글로벌 문화·관광거점 조성 제33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종합 계획에 따라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제 정 안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 ①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전남자치도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세계 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숙박·관광·여가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등 휴양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조성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및 지원방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조성에 관한 방법·절차 및 지원 등 관광지 조성·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남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내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내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

제 정 안

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과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营业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 도지사가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안 제33조 및 제34조)

제정안은 국가 및 전남자치도로 하여금 전남자치도에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 관광·숙박시설, 복합리조트 등 시설이 설치·유치·개발·조성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국가 및 전남자치도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남자치도의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복합리조트 등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전남자치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가 등 행정주체에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국가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에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며³³⁾, 총칙에서는 국가 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가치, 목적 등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인 사항(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 행·재정적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³⁴⁾.

33)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24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반면, 제정안은 국가 및 전남자치도에 개별·구체적인 행위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국가 및 전남자치도에 특정한 행·재정적 조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법률의 일반적인 사례와는 차이가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는 전남자치도에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 관광·숙박시설, 복합리조트 등 시설이 설치·유치·개발·조성하는 것이 국가 및 전남자치도의 본질적인 기능에 해당하는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제정안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인 입법실익 여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35조)

제정안은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남자치도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으며 전남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북도법」 제43조³⁵⁾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5) 「전북도법」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

이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³⁶⁾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승인 및 해제승인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취지임.

제정안에 대하여는 전남자치도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국가 및 전남자치도의 본질적인 기능에 해당하는지, 지방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제정안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인 입법실익 여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36조)

제정안은 도지사에게 전남자치도의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3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②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북도법」 제48조³⁷⁾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도 전남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에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은 도 차원에서 수립·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외 특별한 입법실익은 없어 보임.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도의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 진흥 시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지방분권 보장,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 제정안의 목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37조)

제정안은 도지사에게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³⁸⁾에 따른 외국인전

37) 「전북도법」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8)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카지노업 허가의 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³⁹⁾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서 이양하려는 카지노업 허가 관련 권한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내국인의 입장이 허용되는 카지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카지노업은 사행산업으로서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남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⁴⁰⁾.

39) 「제주도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과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营业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0) 참고로, 국내 카지노 영업장은 총 18개소이며, 그 중 외국인 전용 영업장은 17개소임.

3. 에너지산업 등 미래신성장 기반 조성(제4편)

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제1장, 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 정 안
제38조(전기사업에 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제 정 안

· 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협의
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가 및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 효율적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
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특례) ① 도지사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이하 “영농형 태양광”이라 한다)하는 사업을 집단
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
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화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포
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영농계획을 포함한다)을 작
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제1호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법인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
가·허가·신고·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이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면적은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면적은 제외되며, 「농지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모든 농지에 허가기간은 23년 이상으로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제 정 안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④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농지의 소유자가 집적화단지가 조성된 농지에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 및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 효율적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⑦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⑧ 집적화단지 지정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청의 권한 중 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발전용량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그에 필요한 송전선로 및 그 부대시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2. 두 개 이상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반조사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안 제38조)

제정안은 풍력 및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각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 제303조⁴¹⁾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도 「전기사업법 시행령」⁴²⁾에 따라 일정규모

41) 「제주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이하의 전기사업허가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43)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한 적합명령 권한 또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도지사가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남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 시 전력계통연계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과정에서 다수 지자체와 관련이 있어 지자체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발전사업 허가권을 전남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 4. 삭제
 -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 4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안 제39조)

제정안은 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및 관계기관의 시책 마련의무,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남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수요 현황,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통일적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전북도법」의 경우 제정안과 유사하게 전북자치도 내에서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⁴⁴⁾.

(안 제40조)

제정안은 도지사가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하는 사업)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적화단지의 지정요건, 절차 등 필요한

44) 국가차원의 통일적 정책 수행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음.

사항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므로⁴⁵⁾, 해당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 ☐ (사업주체) 농업인을 발전수익의 수혜자로 설정하여 농가소득 제고
 -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 ☐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대상, 공간계획법과 연계 집적화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최대 23년)
 - *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 영농형 태양광 시설 보험상품 개발 등
 -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한해 금융사업 등을 지원하여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유도
 - * 재생에너지 지구 외 입지는 농촌 난개발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 (승인절차) 기존 개발행위허가, 일시사용허가 권한 등 활용(지자체)
 - 인허가 과정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기준*, 성실한 영농여부 계획**, 농업인 사실여부(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확인
 - *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토 중 ** 재배품목, 생산량 등 영농활동 계획
- ☐ (사후관리)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체계 마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변경 포함) 일시사용 허가 취소 및 과태료·벌칙 등 부과
 - 발전사업자는 실제 영농여부 및 생산량 등을 정기적으로 지자체 제출
- ☐ (추진체계) 제도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 영농형 태양광 정의, 사업주체,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현장 모니터링, 정책 개선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45)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 4. 23.

참고로, 법제처는 안 제40조제3항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허가의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안 제41조)

제정안은 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남자치도의 특수성, 전국적·통일적 기준에 따른 일관적인 공유수면 관리 업무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함에 따른 예상 영향을 검토하는 ‘공간 기반 제도’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특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목적의 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기존 법령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첨단전략산업 육성(제2장, 안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 정 안
제2장 첨단전략산업 육성 제42조(첨단전략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전남자치도 내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분야에 대한 필요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핵심소재부품산업 2. 드론, 미래비행체 등 항공산업 3. 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 4. 전기차, 수소차 등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5. 차세대 백신, 면역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산업 6. 화합물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산업 7. 인공지능 및 데이터산업 8. 그 외 국가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특화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 분야 ②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전남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산업 육성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제 정 안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회의 심의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⑥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영위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영위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한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남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제 정 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특례) 도지사는 전남자치도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한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 제3호의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제1호, 제2호, 제4호의 특구·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농촌활력촉진특구
2. 제3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
3. 제43조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4. 제4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투자진흥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제22조

제 정 안

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4항, 제27조, 제30조제1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47조제7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6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제9항, 제7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제6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0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2항 및 제47조제7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안 제42조)

제정안은 전남자치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첨단 우주산업, 친환경모빌리티산업, 첨단반도체산업, 인공지능 및 데이터산업 등 산업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국가 및 전남자치도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에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은 도 차원에서 수립·추진하는 계획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외 특별한 입법실익은 없어 보임.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도의 첨단전략산업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지방분권 보장, 지방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제정안의 목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정안은 전남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부품 장비산업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의 지정·설립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남자치도에 요청받은 각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강원도법」 제32조 및 제33⁴⁶⁾조와 「전북도법」 제77조⁴⁷⁾

46) 「강원도법」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과 달리 도지사에게 요청권한이 부여된 각종 단지의 종류가 확대되었고, 각종 단지의 조성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요청에 따르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47) 「전북도법」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정안과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 비교>

제정안		강원	전북
제43조	전남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	○
제44조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	-
제45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	-
제46조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특례	-	-

이에 대하여는 통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각종 단지의 조성절차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남자치도의 특수성, 통일적 기준에 따른 각종 단지 조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안 제45조와 관련하여, 입지요건에 부합하는 곳 중에서 의료연구개발 및 제품화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검토하는 것이 「첨단의료단지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특정 지역을 위한 법률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47조)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각종 특구·지구 등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강원도법」 제64조⁴⁸⁾ 및 「전북도법」 제93

조49)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전북도법」과 달리 권한이양의 존속기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데, 권한이양에 따른 전남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특례의 존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50)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48) 「강원도법」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사업(「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지역에 강원자치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49) 「전북도법」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농생명산업지구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

3. 제5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4.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0) 「전북도법」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참고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계획에 따라 특구 및 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48조)

제정안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협의, 통합허가, 통합관리사업장 내 오염도 측정, 실태조사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통합허가 기준 등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오염물질별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도를 하나

각 지구에 대하여는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4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최초로 승인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지구·계획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통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업장별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려는 제도임.

제정안에 대하여는 전남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일적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2017년 도입된 제도로, 관련 권한 이양 시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 통합관리사업장 대상 일관적 관리체계 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운영(제3장, 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안 제49조)

제 정 안
제3장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제49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남자치도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할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관리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도지사가 전남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 제162조⁵¹⁾, 「전

북도법」 제73조⁵²⁾ 및 「새만금법」 제11조의⁵³⁾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51) 「제주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2) 「전북도법」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3) 「새만금법」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외 해제에 관한 사항이 없는 등 관련 입법례와 비교하여 일부 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입법례⁵⁴⁾에 준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임.

(2) 투자진흥지구의 운영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 정 안
제50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54) 「전북도법」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도법」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 정 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51조(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국가는 전남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제14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53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

제 정 안

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55조(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기관·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 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 정 안

-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안 제50조 및 제56조)

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특례 및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방식의 임대, 임대기간 상한 등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새만금법」 제45조의 2⁵⁵⁾ 및 「제주도법」 제165조⁵⁶⁾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55) 「새만금법」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56) 「제주도법」

제16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제정안은 전남투자진흥지구에 입주, 이전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남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에 대하여는 전남투자진흥지구 외 다른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및 건전성 유지 필요성, 전남자치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협력기업, 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 등 관련 입법례에 포함된 용어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해당 용어나 표현은 제정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정안을 입법화한다면 이에 대한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별규정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⑨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개별규정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요약>

개별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사유
§50(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련 특례는 신중한 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제50조제3항 신중검토) 협력기업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특례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고, 협력기업이 입주기업이라면 안 제56조에 따라 수익계약이 가능한 점 고려 필요
§56(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련 특례는 신중한 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수정필요	-(제56조제3항 수정필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국가재정의 불확실성 및 성실히 대금을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련 부분 삭제 필요

(안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 상의 각종 고용의무, 유급휴일 등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⁵⁷⁾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5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국비분담비율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진흥지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 제208조⁵⁸⁾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전남자치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국가 지원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에 대하여는 한정된 국가예산의 합리적 배분 필요성,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국가보조금에 대한 통일된 기준유지 필요성, 전남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전북도법」의 경우 안 제52조와 유사하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음⁵⁹⁾.

개별규정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58) 「제주도법」

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59) 전북특별자치도만 우대할 근거가 부재한 점, 통일된 보조금 기준 운영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산자부 의견이 있었음.

<개별규정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요약>

개별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사유
§51(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	신중검토	-(제1항제2호 신중검토) 투자진흥지구 내의 외국투자기관에 특례를 부여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제1항제4호 신중검토)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제2항 신중검토) 제정안은 외국투자기관의 근로자에 대해 휴식권의 최저기준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국가보훈부	신중검토	-(제1항제1호·제3호 신중검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헌법」 제32조제6항 및 보훈관계 법령의 취지에 불부합

(안 제53조)

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 상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대하여는 내륙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전남자치도의 특성상 버스, 승용차, 도보 등을 통한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외국인의 발생 가능성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전북도법」은 농생명지구, 산업관광진흥지구 등에서 근무하

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 특례를 마련하
되, 특례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까지로 제한
하는 규정⁶⁰⁾이 도입되어 있음.

(안 제55조)

제정안은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진흥지구를 「규제자
유평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권자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로 규정⁶¹⁾하고 있
으므로, 제정안의 도입여부와 관계 없이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투자진
흥지구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60) 「전북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효력을 지닌다.

6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도지
사”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공항·항만 경쟁력 확보(제4장, 안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1) 공항경제권의 조성(안 제57조 및 제58조)

제 정 안
제4장 공항·항만 경쟁력 확보
제57조(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이하 “공항경제권”이라 한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8조(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국가, 전남자치도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의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재 공항경제권에 대해 규율하는 별도의 법체계는 없는 상황

이며, 전국의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려는 취지의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⁶²⁾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 정 안
제59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남자치도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남자치도가 세계적인 물류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공항 및 입출항 항만의 최적화, 환적 등의 신속성 확보 등 국내·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남자치도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제조·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물류 산업의 육성, 물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0조(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남자치도 관할 지역 중 공항·항만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물류특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물류특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국제물

62)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2024.06.14.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024.08.21. 전체회의 상정, 의안번호 제2200233호

제 정 안

류특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국제물류특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목적상 인접한 시·도의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도의 관할지역을 포함하여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해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제물류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 국제물류특구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제60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변경 또는 수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국제물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이하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

제 정 안

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한다.

③ 국제물류특구 내에서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63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남자치도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국제물류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안 제59조)

제정안은 전남자치도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 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하고, 전남자치도의 국내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에게 전남자치도의 물류 산업 육성 및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전남자치도의 물류산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가 등 행정주체에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국가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며⁶³⁾, 총칙에서는 국가 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가치, 목적 등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인 사항(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 행·재정적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⁶⁴⁾.

63)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24

6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에 대하여는 전남자치도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에 해당하는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제정안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인 입법실익 여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60조)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남자치도 관할 지역 중 공항·항만·철도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설정하여 국가 주도로 전남자치도에 국제물류특구를 조성하여 전남자치도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목적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전남자치도가 아닌 국가가 직접 국제물류특구를 조성·지원하는 것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제정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특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이 아닌 전남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남자치도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국제물류특구의 지정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특구 내 항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구 지정 등 결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절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61조 및 제62조)

제정안은 국제물류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일반·첨단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안 제61조),

국제물류특구 입주기업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⁶⁵⁾에 따른 ‘관세 등의 면세 또는 환급 등의 특례’를 적용하

6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려는 것임(안 제62조).

안 제61조의 경우 각 호에 따른 지구와 국제물류특구의 지정목적, 절차, 입주요건 등 차이를 고려하여 도입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결정이 필요해 보임.

안 제62조의 경우 안 제61조에 따라 국제물류특구 지정 시 자유무역 지역 지정 효과가 의제되면 국제물류특구에 내 기업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⁶⁶⁾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도 동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어 보임.⁶⁷⁾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6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의미함.

67) 기획재정부 또한 동일한 입장이며,

다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국제물류특구의 자유무역지역 의제가 규정되지 않는 경우 안 제62조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63조)

제정안은 전남자치도 내 공항·항만 및 그 배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의무적 재정 지원 근거,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항만 시설의 사용료 감면 근거,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 조치 마련 의무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각종 지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제정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남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공항, 항만 외 배후지역에 대한 인프라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제3항과 관련하여, 국제물류특구 지정 여부와 필요한 통관절차가 불확실하므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마. 토지의 효율적 활용(제5장, 안 제64조 및 제65조)

제 정 안
제5장 토지의 효율적 활용 제64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제65조(개발제한구역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의3, 제16조의4,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청의 권한 중 전남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관리계획 등 전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에 따른 전남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안 제64조)

제정안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부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⁶⁸⁾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남자치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삭제 <2008. 1. 8.>

(안 제65조)

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지사는 이양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전남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을 통해 전남자치도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광역적 총량관리 필요성, 지역 간 이견 조정 어려움,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논란 최소화 필요성 등 감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보칙 및 벌칙(제5편 및 제6편)

제 정 안
제5편 보칙 제66조(해외협력) 전남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제67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남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69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69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정 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칙

제73조(과태료)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7편 보칙은 해외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8편 벌칙은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68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특구의 지정해제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의 도입여부에 맞추어 청문절차의 이행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71조 중 개발부담금 관련 부분의 경우 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권한을 전남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⁶⁹⁾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6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5. 부 칙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남도 폐지) 종전의 전라남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라남도 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전라남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도지사 (전남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전라남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남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남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새로 위촉·임명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의 사무와 전라남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남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남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해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남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전남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정 안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남자치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남자치도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및 각종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원만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이양받는 본칙이 도입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적절한 적용례를 두어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⁷⁰⁾.

둘째,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법률에서 전라남도, 전라남도지사 등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전남특별자치도, 전남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70) 「강원도법」 법률 제19427호

부칙 제3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셋째, 전라남도의 폐지 및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맞추어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에 존재하는 시·군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⁷¹⁾.

문 의 처
02)6788-5337

71) 「전북도법」 법률 제19839호

부 칙 제5조(중전 전라북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④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전라북도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으로 본다.